비조치의견서 (☑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요청대상 행위	□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인 금융회사가 동일 지주회사의 타 계열사와 전자 문서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망분리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지
판단	□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인 금융회사가 동일 지주회사의 타 계열사와 공동 으로 사용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 망분리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.
	 다만,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 승인을 받는 등「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」제2조의2 제3항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.
판단이유	□ 금융회사가 다른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은 전산실 망분리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서비스번호(port)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 통신망과 연결이 가능합니다(「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」제2조의2제2항제2호다목)
	 다만, 「금융지주회사법」제48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공동사용 기준 준수 와는 별도로,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 승인을 받는 등 「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」 제2조의2 제3항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.

- **** <u>비조치의견서의 효력</u>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항· 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 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 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 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 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